

1.약관명: 대출거래약정서(주택도시기금대출 : 가계용)

2.시행일: 2024.01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~제8조 (생 략)</p> <p>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 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<u>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.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2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3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2. <u>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.61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.1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.0%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>제1조~제8조 (현행과같음)</p> <p>제9조 (현행과같음)</p> <p>① (현행과같음)</p> <p>1. ----- : ----- ----- <u>4.69억원</u> -----</p> <p>2. ----- : ----- ----- <u>3.45억원</u> -----</p>	<p>통계청의 '2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순자산 기준금액 변경</p>

